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7월13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4.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6)
5.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6)
6. 집단소송법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0)
7.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1)
8.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4)
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9)
10. 집단소송법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4)
11. 집단소송법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7)
12. 집단소송법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7)
13. 집단소송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4)
14. 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89)
15. 집단소송법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2)
16. 집단소송법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15)
17. 집단소송법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0)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4)
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7)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25)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3)
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8)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74)

상정된 안건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 2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 2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 2

(10시16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소위 회의가 마친 후에 언론인 여러분께 백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할 분이 계신가요?

없으면 바로 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심사 방식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몇 개의 파트로 나눠서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10시18분)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 삭제에 대해 법안심사자료 20페이지까지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우선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심사자료 1·2항 항목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및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은 검찰권 남용의 위험을 제거하면서도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인권옹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고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검찰수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보완수사는 그동안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검사의 의무로 기능해 왔었는데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각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이 도입되면서 사건처리 지연, 복잡한 절차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더하여 수사 지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약화 등과 같은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억울한 범죄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국민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빈틈이 없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하고 법무부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단순히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고 경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치적으로 통제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보완수사는 이러한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그동안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였으며 안장된 사건들도 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된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 반하여 검사가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크게 약화됨으로써 형사사법 전반의 균형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됩니다. 선진적인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은 상호 견제와 책임성의 확보로 어느 기관이든 충분한 견제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권력분립과 절차적 통제라는 가치와도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송치 기록만 보고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과 적정한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공소기관이지만 동시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송치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서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제출 자료들은 신뢰할 수 있는지,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는지,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들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록에 없는 사실들을 제대로 발견하기 어려워 실제 진실 발견에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폭력사건이나 강력사건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인 사안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만나 직접 진술을 들어 볼 수 없다면 제대로 처분을 하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소 책임이 있는 검사가 사건 실체에 맞는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대체 수단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부처나 지자체 소속으로 개별 행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지만 수사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특사경에 대해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수사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특사경 중 근무경력 3년이 되지 않는 인원이 80%가 넘고 수사 전담조직이 아닌 부서에 근무하면서 수사와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인원이 79.2%에 이릅니다. 수사나 형사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실무상 특사경의 상당수가 검사의 지휘·감독을 필요로 하는 것이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대안 없이 수사지휘를 폐지할 경우 수사역량 약화, 인권침해 등의 여러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부득이하게 검사의 수사지휘를 삭제한다면 최소한 일반 사경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지도 감독, 심사 감독과 같이 일반 사경보다 높은 수준의 사법 점검이 가능하도록 일반 사경과의 차별화된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건송치까지 삭제하여 특사경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취지로도 이해되는데 특사경 수사개시의 자율성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경우에도 전건송치만큼은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하여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최종 단계에서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과 수사종결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검사의 수사지휘 체계로 인해서 특사경에 대한 지휘가 이루어졌습시다만 이와 같은 법률체제로 변경되게 된다면 지명을 받은 특사경에 대해서 도대체 지휘권자는 누구인지, 특사경으로 지명받지 않은 해당 기관의 상급자들도 수사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지금 지휘체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영장 집행 지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의 집행 지휘는 재판의 집행 지휘지 수사지휘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수사 유무와 관계없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발의된 개정안들은 모두 검찰청 직원에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한 규정을 삭제하였는데요. 이 경우 형집행장을 포함한 모든 영장들은 사법경찰관만이 집행이 가능하여 공소청 직원들은 불출석 피고인과 증인 구인, 형집행 등 일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경찰에게 축탁할 경우 경찰의 업무 과중이 불가피하고 축탁은 지휘와 달리 구속력이 없어 경찰이 형집행, 불출석 피고인·증인 구인을 거부할 경우 집행 불능으로 공소유지, 형집행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 자유형 집행 통계를 보면 자유형 미집행자가 2025년에만 약 6400명이 발생해서 3600여 명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였고 연도별 재산형 집행 통계를 살펴봐도 연 4조 6000억~5조 원가량의 재산형 집행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업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거나 형집행 등 근거 조문에 사법경찰관 외에 공소청 직원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도적 변화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문에 관해서 체계정합성 등 여러 의문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문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방대해서 우선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더 추가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법무부차관님, 대검은 법무부의 외청이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법무부는 행정부서고 행정부서를 통괄하는 것은 국무총리실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국무총리께서 밝힌 입장은 ‘지난 5월에 이미 총리실에 있는 검찰개혁추진단이 운영될 때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 후로도 국무총리께서 재직 중에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법무부하고 대검은 정부의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오셨다는 말씀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입장에 대한 것에 추가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정말 합리적인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실적인 우려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밝히신 입장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이 전면적인 폐지는 아니다, 총리의 입장은 그런 뜻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발표문 내용에 보시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완수사권이, 2차 수사권이 검찰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서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법무부와 대검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특사경 관련해서는 그러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사경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경찰과 똑같은 절차로 사건이 처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불송치 기록을 송부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을 텐데 지금 특사경 같은 경우에 여러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고 KICS 등 형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와 물적 기반도 약한 상황입니다. 수사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께서 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검할 수 있는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지금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과 같이 수사지휘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사경과 같은 협의·지원이 아니라 지도 감독 등의 강화된 검찰과 특사경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 강화된 설정은 사실상 수사지휘권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시는 취지가?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지휘의 정도와 지도·협력의 관계가 어떻게 칼로 물 베듯이 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훨씬 더 강화된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

○**박은정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강화된 부분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법무부에서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예, 추후에.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 중수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중수청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건송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하면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각 제도의 설계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하에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과정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사·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검찰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부분이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과 기소권이 결합함으로써 인해서 통제받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지적이 있어 왔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개시를 사경은 범위 없이 할 수 있고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요. 거기에 대한 종결조차도 1차 수사기관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구조기 때문에 그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사후적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가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저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이 전건송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중수청은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그런데 법무부의 입장이 어떠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방금 말씀……

○**박은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말씀 중에 특사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저희 법안1소위는 조문화 작업을 최종적으로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구체적인 조문화를 해서 한번 주시면 저희가 심사하거나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청 말씀 드리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차관님, 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두 분께 자료 좀 한번 드리렵니까? 차관님하고 차장님께 자료 좀 한번 드려 보십시오.

이게 제가 평소에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주장해 오던 내용을 한번 조문화시켜 봤습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96조 1항으로 ‘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개시·진행하지 못한다’.

2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치받은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소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호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사건이나 구속사건으로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통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시한이 촉박한 경우’, 2호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이에 범죄의 증거가 사라질 염려가 있는 경우’, 3호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3항에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수사 하지 못하며 사법경찰관에게 자료를 이첩하여 수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제 평소의 주장 내용을 여기다 담아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님은 이 정도 사안이면 경찰 수사의 허점,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의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항을 구조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행정처 차장님께서도 이 정도 사안이면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사자의 권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뭔가 과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는지, 특히 이것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뭔가 남용하는 이런 행태가 혹시 가능한지, 있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대책이 있겠는지 두 분 의견을 한번 쥬 보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께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위원님께서 방금 법안을 주셔서 검토에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 기능은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었다고 보고요. 검사의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그 범죄사실을 기초로 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송치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진범이 새로 발견되는 경우

라든지 공범이 발견되는 경우라든지 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고라든지 그런 반대되는 상황이 발견됐을 경우에 과연 그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경찰에 내려보내는 것이 수사절차상 효율성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설계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성범죄사건이나 아동학대사건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을 못 한 범죄사실 등에 대한 수사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예컨대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경위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성 있게 진술을 하고 그 신빙성에 대해서 검사가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계부가 딸을 스토킹했다고 해 가지고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계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내 가지고 구속기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렇게 보완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 조문 안으로서는 어떤 조문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차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차분히 검토하고, 법원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한지, 낸다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지금 여러 피해자단체나 변호사단체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듣기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개시부터 종결까지 다 맡겨 놓고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대부분 같은 지역에 계속 근무를 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지역 유지나 지역의 여러 이해관계와의 유착이 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거나 묻히는 경우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보완수사요구권은, 예를 들면 지금 피해자단체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보완수사요구권 지금도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요구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사건처리 기간은 늘어나는데 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것들, 여러 제도가 있지만 어차피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뭔가 밝혀지거나 뒤집어진 사례가 없었다, 그래서 외부 위원들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꾸리고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사통제가 안 된다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청을 하고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실제 피해가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중수청 사건이나 특사경은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만약 중수청 사건이나 특사경이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하지 않고 경찰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예상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위원님께서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주체가 수사를 진행하고 나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방향성이 같고 그냥 일반적인 보충 차원이라면 그것이 이행될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앞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잘 작용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사 주체가 내린 판단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될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내린 결론을 다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주 형제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보고 재수사요청을 하고 재차 재수사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수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었고요. 그것을 받아본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해 가지고 형제 간의 살인사건을 규명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경찰,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그 증거 보완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새로 규명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건송치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1차 수사기관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고소인과 피해자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통해서 송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 사건들은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지금 경찰의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하고 90일간 사건기록을 송부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90일간 기록 검토를 통해서 검사가 그 내용을 보고 시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사건의 실체 과정이 그 기록에만 나타나지 않는 사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자료 등에 대한 보완수사와 검증을 통해 가지고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불송치 송부 기록은 기록만 보고 그 내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그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컨대 1차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교차검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폐해는 클 것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건송치를 해도 추가적인 수사권이 없으면 해결되는 게 없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런 취지이신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건송치가 될 경우에 일차적으로는 검사가 그 기록을…… 전면적으로 결정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건 처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건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전건송치가 되어야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건송치가 되고 또한 검사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은 더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때는 행안부 쪽도 출석을 시켜서 그쪽 얘기도 한번 들어 보는 게 회의의 진행이랄까요, 쟁점을 모아 나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수처 쪽도 형사소송법 관련된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경찰청에서 나오는 게 얘기하기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은정 위원** 예, 경찰.

○**소위원장 김승원**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전건송치나 아니면 보완수사를 직접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차관님, 지금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로는 안 되고 직접수사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얘기한 것의 가장 큰 논거가 경찰이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게다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이 한번 결론 내면 그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는 게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제도의 문제입니까, 조직 기강의 문제입니까? 조직 기강의 문제 아니에요? 경찰이 어떤 결론을 냈어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하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해야 하고 국가공무원이라든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해 지금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조직 기강의 문제고, 정부에 계시니까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조직 기강이 다 무너져 있으니깐 우리가 조직 기강을 세우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도를 완전히 바꾸고, 바꾼 제도하에 조직 기강 다시 세워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수사 주체가 결론 내린 것과 다른 결론을 내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이 이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TF에서 발의한 법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는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보완책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실체적 진실을 중시하느냐, 아시는 것처럼 수사절차는, 형사사법절차는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잘 발견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라서 우리가 효율성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범죄피해자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이에요.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요. 피해가 발생한 뒤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범죄를 예방하는 것 그것은 안타깝게도 검찰이나 법무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경찰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범죄예방 절차 그 작용은.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도의 문제도 우리가 잘 설계하겠지만 조직 기강의 문제가 더 크다. 이걸 왜 안 지킬까를 왜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완수사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보완수사를 안 한다? 되게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직 기강의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5페이지에 대검이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하면서 내건 논거가 있습니다, ‘사경의 확증편향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안 할 가능성 방지’. 이것 그동안 검찰이 이렇게 했지요. 검찰의 확증편향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절대 안 했지요.

‘사경 권한 확대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성’, 검찰은 그렇게 수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아 왔습니다.

‘법률에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경우 무분별한 별건수사 차단 가능’, 무분별한 별건수사 계속해 왔어요.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이 방금 만드신 이 안에도 보면 3항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검사가 2항에 따라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수사 하지 못하며 사법경찰관에게 자료를 이첩하여 수사하게 하여야 한다’ 해서 별건수사를 못 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바퀴 돌면요, 2항이랑 결합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데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검사는 다시 직접수사 할 수 있습니다. 별건수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항에 따르더라도 별건수사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검사가 직접수사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것이고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 또 한번 볼까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수사권 독점 이것 어떻게 폐해를 막을 거냐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검사의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법무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어요. 김건희 불기소하고서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소 독점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오히려 수사기관은 분권이 돼 있어요.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중수청 그다음에 특사경까지 수사기관은 분권이 돼 있는데 오히려 검사의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청구권, 헌법에 있기는 하지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한 반성을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김용민 위원**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보완수사요구 이행이 기강의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경찰과 검찰은 협력관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용어에서 나타났듯이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으로서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검토하고 판단하고 본인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라고 해서 송부하는 사건들이 정말로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그와 같이 판단이 다를 경우에 이것을 온전히 본인의 생각만을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결론을 관철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거기에 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결국 수사권을 무한히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거에 그러한 방식으로 수사를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 이와 같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송치사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범위 내에서 수사가 조금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절차라든지 외부적 통제를 통해서 남용할 우려를 축소하면 현실적인 부작용은 적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사의 직접수사에 대한 폐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1년에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130만~140만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2대 범죄 등으로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이 1500~3000건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부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이 이와 같이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만 지금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기능을 못 하게 된다면 나머지 약 120만~130만 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함께 경찰에게 모두 보완수사요구를 내려보낸다고 한다면 지금 10% 정도의 보완수사요구로도 수사 지연이 심각한 상황인데 검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약 40~45%가량의 보완수사 이행 부분을 경찰에게 다시 보완하라고 내려보냈을 때 사건처리 지연과 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 심사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사사법절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

금 우려되는 것은 제도개선을 했을 때 실제적 진실이 잘 발견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법사위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들어오게 된 거라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전건송치를 하지 않고 경찰에게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적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건송치를 하지 않고 불송치가 가능하게 해서 수사절차에서 장점은 뭔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남고소·남고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장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남고소·남고발 사건이 사경에서 종결함으로써 피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사건처리 절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송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효과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지금 차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전건송치가 폐지되고 불송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더 크다고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맞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법경찰관께서 1차 수사기관으로서 충실히 사건 수사를 하고 계시고 그 결과를 사건으로 송부하고 계십니다만 경찰로 하여금 형사사건에 대해서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검사 등 법률가가 판단해야 될 업무의 일부를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사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기 종결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건의 실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법리적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한 거기에 대해 법률가들도 판단이 어려운 사건들에 있어서 그러한 판단을 사법경찰관에게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인 것인지 저희는 반드시 자문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선 법무부차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보완수사권 허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는데 어쨌건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따르면이라도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통한 수사의 통제라든가 관리·감독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는 사실 강제수사가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국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한데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보완수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완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까지 영장에 깊이 관여를 한다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차관님 의견은 어떻게습니까?

그러니까 보완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수사에 대한 통제 또 수사에 대한 효율화 혹은 실제적 진실을 온전히 밝혀내는, 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 활용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장 청구 관련하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습니까만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구속 영장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압수수색영장이 경찰이 신청해서 검사가 검토할 때 기본적으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범위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범죄가 발생했고 또한 시급히 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명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속하게 검토해서, 또한 검사가 직접 영장을 수정해 가지고 청구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수사를 온전히 하고 난 뒤에 청구한다라는 부분들이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체포와 구속 영장도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실제 도주하였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신병을 확보해서 추가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완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피의자가 도주할 시간을 벌어 준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제도를 통해서, 영장 검토를 통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보완수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경찰에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거기다 사선으로 줄 찍찍 긋고 ‘이것은 안 돼’ 이런 소극적인 역할에 그칠 게 아니라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을 보고 이런 것도 압수수색영장에 한번 포함시켜 달라, 여기는 한번 해 봤느냐라고 경찰이랑 협력적인 대화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안 해 가지고 오면 ‘이것도 우리가 영장 발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찰이 그런 조언은 따르겠지요. 그런 식으로 수사에 같이 관여를 하면 경찰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검찰에서 지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협력적으로 하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경찰로부터 수사 종결된 기록 받고 나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어떻다, 그때 가서 판단하지 말고 압수수색영장부터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수사 실명제·책임제를 도입해서 경찰도 자기 이름을 걸고 팀의 이름을 걸고 수사를 끝까지 하고 압수수색영장 신청부터 받은 그 검사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실명을 걸고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부실수사라든가 혹은 왜곡수사, 지연수사에 대해서 사후적인 검증을 자기 이름을 걸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장윤기 사건 보니까 수사의 재량이 넓다 보니까, 예컨대 증거로 혹은 간접사실로 첨부할 수 있는 것들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사실과 관련된 모든 정황들을 다 전자화시켜서 담아내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은가.

결국에 수사의 신속성·기밀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수사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인 자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아까 차관님께서 기록만 보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당사자에 대한 면접권일까요 혹은 당사자 의사

확인권일까요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의 불만 그런 진술 접수라든가 등등 어떤 명칭을 통 해서라도 당사자의 의사라든가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한 점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것이 대안으로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이 진술거부권 고지도 해야 되는지, 증거능력은 아마 없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임의수사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 법원행정 처에서도 얘기했듯이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는 녹음 혹은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게 해서 피 의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조서뿐만 아니라 녹음으로도 다 남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남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하셨는데 토착화, 지역 유지들과 밀착화된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도 필요하고 또 저도 법조에 이삼십 년 있다 보니까, 검사님들은 2년마다 발령받으니까 순환이 되는데 검찰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10년, 20년 썩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경찰과 같은 토착화, 지역 토호들과의 밀착이 이루어지는 경 우를 제가 종종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국민적인 관점에서는 수사가 신뢰를 못 받 거나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부도 그 점은 대안을, 국민 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지연 문제는 지금 가장 심각한 국민적인 피해 호소 사유인데요. 예컨대 검찰로 넘어갔는데 피의자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 부르더라 그런 호소가 저희 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을 저희 개정안에서는, 3개월 이내에 하라라고 하는 현행 규 정을 준용하는 것도 있지만 1개월 이내에 하라라고 했고 법사위원장님과 현장에서 일하 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 보니 웬만큼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 아니면 1개월 이내에는 다, 예컨대 보완수사요구든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주신 바가 있어서 이 수사 지 연 문제는 수사의 어떤 기한을 설정하는 것 또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것은 꼭 필 요하다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도 기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현장 실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컨대 당사자를 불러서 기소중지 될 만한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라고 그러니까. 당사자 는 검사가 하라고 그러면 하지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사인하면 그게 참고인증지든 뭐든 사유가 돼 가지고 수사기한을 무한히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요령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등등 저희가 해야 될, 논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 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앞부분, 검사의 수사권 삭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아무래도 1회독은 해야 되니까 다음에는 심사자료 2편 21페이지 5항부터 10항까지 수석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기관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5항부터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목차의 5항부터 10항까지, 우선 54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사원칙 및 수사 시 준수사항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형소법에서 수사 파트, ‘수사’ 장은 195조부터 시작하고요. 현행 195조의 조 제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의 경우에는 195조를 전면 개정해서 수사의 기본원칙 그리고 그 내용을 죽 바꾸고 있고요.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그리고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2항에 보시면 자문 요청권을 두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195조는 그 위치나 내용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95조를 어떻게 할지 규율해 주셔야 되고요.

김한규 의원안에서 자문 요청이라는 부분이, 제가 검토의견 드리면 국가기관의 자문이라는 것은 관계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문이라는 관계는 국가기관이 국가 밖의 민간으로부터 전문가 의견을 들을 때 자문 요청을 쓰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검사의 객관 의무’ 조항입니다.

이것은 ‘공소’ 장, 공소 편에 있는 부분인데요. 246조의2는 제246조(국가소추주의), 247조(기소편의주의) 사이에 ‘검사의 객관 의무’를 명시하자는 거고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구속기간 변경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고요.

자료 29페이지 봐 주시면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서는 구속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각각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7일 그리고 검사 단계에서 7 플러스 7 이렇게 기간 단축하고 있고 그리고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을 검사가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계속하여야 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의원안,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구속기간 연장시에도 신청 주체를 검사가 아니라 사경 신청으로 하도록 검사의 권한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안의 특징은 현행은 경찰 단계가 10일 또는 7일인데 김한규 의원안에서는 검사 단계가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기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10 플러스 10, 그러니까 경찰이 최대 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도록 구속기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공수처나 특별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형소법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공수처나 특별검사, 상설특검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각각 그 법률로 옮기는 것이 법제 체계상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속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수사실무를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김한규 의원안과 같이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하지 못하고 10일 안에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면 사후 보완수사요구 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계속 구속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사인권보호관 신설에 대한 내용이고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검사의 인권보호, 절차가 악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수사기관에 개방형 직위 형태의 수사인권보호관을 신설하자는 내용이고요.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나 수사관 교체 권고,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항은 형소법 사항이 아니라 직제 관련 사항이거나 신분보장·임기 등 법률로 입법사항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에는 행정조직, 그러니까 중수처법이나 경찰법 등 행정조직 관련 법률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수사기관이라고 법문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계에서 어디 단계까지 줘야 되는지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 영장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지금 현행을 보시면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방법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서는 이 구성방법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내용이고 광역공소청장 추천이라든지 중수청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추천 등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우선은 영장심의회 자체가 21년 검경수사권 때 들어온 내용입니다. 지금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존치 필요성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소청법에 신설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건심의위원회라는 것인데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나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어서 기능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계속 존치하는 경우에도 위원들을 사전에 미리 명시하고 미리 위촉해 놓으면 심의의 객관성이나 수사기밀 유지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소심의회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및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구성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로 무작위로 구성하게 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 말씀을 드리면 법관의 재판이 아니라 민간으로 구성된 지방법원 내 기구로 공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5번 항목, 수사원칙 및 수사 시 준수사항 관련 의견입니다.

김용민 의원님 안, 차규근 의원님 안에 규정된 수사의 기본원칙, 수사 시 준수사항의 내용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위 내용들은 선언적 규정이거나 기존의 형사소송법 또는

수사준칙에 규정된 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이미 실무적으로 확립된 사항에 해당하여 조문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안에 규정된 사건의 검사에 대한 자문 요청권과 관련하여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정이 먼저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적 자문 요청 제도만으로는 검경 협력의 실효성이 담보될지 의문입니다. 일정한 범위 내 중요 사건에서의 자문 의무화, 자문의 구속력 부여 등 수사협력 절차와 관련된 보완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번, 객관의무 관련입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과 유지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다만 객관의무의 내용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대법원 판례와 같이 실제 진실 발견 의무의 일환으로 객관의무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구속제도 관련입니다.

구속제도와 관련해서는 보완수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속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에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현행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검사의 구속기간은 단순히 수사만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사정 수사의 적정성을 최종 확인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며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위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정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제도의 폐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현행 구속기간은 그대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님 안에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사정의 수사 계속 필요성으로 개정하는 것은 검사에게 별도의 구속기간을 부여한 취지에 맞지 않고 수사 지연 우려가 있음에도 구속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것은 범죄대응력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차규근 의원님 안에 검사 구속기간을 사정의 신청에 따라 연장하게 하는 것은 검사의 사법적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검사에게 별도로 구속기간을 부여한 제도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8번, 수사인권보호관 관련입니다.

수사기관의 개방형 직위인 수사인권보호관을 두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조직논리 등 내부통제의 한계로 실질적 사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경찰 수사심사관 제도와 차별성이 없음에도 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9번, 영장심의위원회 관련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영장 신청 주체인 기관의 장을 추천위원으로 규정하면 심의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또한 영장 대상자 변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역시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습니다. 위원 추천권을 특정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은 추천권자의 성향이나 기관의 정책 방향이 위원 구성에 반영될 가능

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0번, 공소심의회 제도입니다.

사법부 내에 소추결정 기구를 설치하여 같은 법원이 기소와 본안 재판을 함께 담당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심의회 직권 심의 개시가 가능하여 심의회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되므로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높습니다. 심의 대상 사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심사 대상이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고 또한 비법률가인 시민의 판단에 기속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국가소추주의에 반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풍 등에 취약한 심의회의 여론재판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속사건의 경우 단기간 구속기간 내에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대체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체계정합성과 관련된 부분 또 법원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두 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 구속기간 변경 중 차규근 의원안은 공소청 송치 이후에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서 사건의 신청을 요하고 있는데요, 체계상 부합하지 않아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0항, 공소심의회를 법원에 설치하는 부분은 제도 도입 전에 충분한 연구 및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차관님, 여러 가지 논거와 우려는 이해는 되지만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을 그렇게 남용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직 기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 여론재판이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반성이 필요한데 그걸 뛰어넘고 마치 무슨 심판자처럼 얘기하셔서 오늘 심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 속기록을 보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지적하고 이해당사자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반헌법적 권한을 남용해 왔던 조직의 논리를 그대로 지금 가져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고 10월 2일 날 공소청과 중수청이 온전하게 출범해야 되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저희가 논의와 심사를 압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번, 수사원칙 및 수사 시 준수사항 이런 것들은 남겨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편 이와 관련해서 아까 자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자문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잠깐 차관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수사지휘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협력관계를 수사원칙 및 준수사항에 잘 담아낸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존재하고 앞으로의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아주 긴밀한 협력 그리고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의 검사의 객관의무 명시 이 부분도 저는 그대로 살려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특별히 없애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8번의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체계상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중수청이나 경찰청법 등 조직법에서 규율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처럼 이게 뭐 실질적인 사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은…… 법무부,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제도를, 아까 계속 얘기한 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만 계속, 그 결론만 향해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보완수사요구권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부끄러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고심고심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잘 이행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들을 집어넣었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논쟁입니까? 오로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이것만 딱 결론 내고 나머지는 다 실효성 없다 이렇게 하니깐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제다가 반성해야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의 권한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 오셔야 되는데 자꾸 검찰의 권한남용 얘기만 하고 계세요. 검찰은 앞으로 검사들의 권한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조직 기강부터 좀 세워 가지고 오세요.

차관님, 앞으로 검사들이 도대체 기소권 함부로 쓰고 아무나 불기소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 준사법기관론을 들고 와서 ‘저 사람들이 하는 건 괜찮다’ 이 얘기 할 겁니까? 세상에 어느 준사법기관이 검사동일체처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일사불란한 조직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에서도 대법원장이 재판하라는 대로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재판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절대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큰일 나지요. 그게 사법기관의 본질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준사법기관이라고 검사들은 얘기하면서 검찰총장이 제일 말단 검사까지 다 지휘하고 필요하면 사건도 넘겨 버리고 결론을 검찰총장이 다 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법기관에 준하는 거 맞습니까?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법기관의 본질과 맞습니까, 이게? 그냥 그거는 행정기관 아니에요? 행정기관의 본질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자신감을 갖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원도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판사들한테 다 지휘할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것은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거 용인할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사법기관의 영역과 행정기관의 영역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여지껏 검찰은 구별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반성 없이 계속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기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아까 직접수사도 계속 얘기하시는데 공소청으로 만들었을 때 현재 남아 있는 수사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만약에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갖겠다라고 하면 그 인력을 어느 정도 갖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얘기부터 하셔야지요. 저는 검찰에 수사인력 자체를 남겨 두면 안 된다, 검찰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계속 그렇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안이라도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일단 공소심의회는 일본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참고로 해 가지고 만든 제도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 제도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공심회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료나 이런 걸 참고해서 가지고 의견을 추후에 상세하게 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조문심사 과정에서 더 상세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왜냐하면 우선 제가 독일에 가 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지요.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데 경찰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은 반드시 보완수사를 합니다, 검사가 요구한 대로.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아주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법원에서 심사를 하더라고요, 법원이. 그러니까 이것이 수사라는 행정 영역에 대해서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독일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취지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통제하는 방안, 일본에도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구속기간 관련해서는 아마 연장 사유를 사경의 수사 계속으로 조문화한 이유는 일단 이 형소법 자체가 검사의 수사권이 배제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아마 구속 사건에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를 사경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경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사경의 수사 계속이 연장 사유로 규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법무부 입장에서는 기일이 7일은 너무 짧다. 지금 현행과 같이 10일 그다음에 연장해서 또 10일, 이렇게 20일 정도는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도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 관련해서는 우리 1소위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7일 이렇게 얹매이지 말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위원장님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께서 오늘 형사소송법 196조에 대해서 새로운 법안을 갑자기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것은 지금 심사하고 있는 법안과 전면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지금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상태에서 증거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사경의 수사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사의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면적으로 심사하는 1소위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께서 내신 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그대로 보존하는 안이에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안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법안심사를 원하신다면 법안을 새롭게 발의하셔 가지고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켜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의 신속함이나 심사 효율성을 위해서 좀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내용이 지금 법안심사1소위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안심사소위가 이게 공개가 되지 않잖아요. 전체회의는 전체 공개가 되는데 1소위 자체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논의와 마찬가지로 법안심사1소위도 전면적으로 공개해서 이렇게 심사해도 되겠는지를 저는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심사가 진행이 된다면 저는 법안심사1소위도 전면적으로 공개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박은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마치 소위원회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박은정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박균택 위원 소위 내용도 속기록 공개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공개를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의 법안이 3개가 있고 또 홍기원 의원님께서 오늘 중에 또 새로 보완수사권 일부 예외적 존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기 때문에 논의의 진행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의견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좀 조정하는 방안이라든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도 가능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견을 물어봤던 것인데 마치 제가 어떤 법안 발의 절차 없이 편법적인 논의를 시도하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안을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어봤는지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이 있는데 저도 영장이 강제수사의 시작이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인권보호라든가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당장 압수수색영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판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일부 기각을 포함해도 거의 97~98%가 발부가 되어서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법원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참여권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셨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영장 관련해서 사전심문제 두 가지를 대안으로 하셨는데 우선 차장님이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참여권 보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권 보장에 관해서는 압수수색 시에 관계인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들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것을 조문으로 구체화한 의견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관해서는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고민하는 시점에 실제로 청구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게 발부가 적절한지, 특히 전산 정보 등에 있어서는 별지로 다양한 내용이 붙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일부를 압수수색 담당 판사들이 대부분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살려 주는 방식으로 일부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고민되는 부분에 관해서 자칫 그 부분을 함부로 삭제했다가는 유죄의 증거로 쓸 부분이 압수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함부로 살려 뒀다가는 압수수색이 남용돼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제안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영장심사 할 때 제대로 통제를 못 하니까 국민적인 원성, 비난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심의위원회 설치까지 개정안의 내용에 담게 된 것인데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고려해서서 이걸 어떻게 국민적 인권보호 관점에서 잘할 것인가 그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공소심의회는 기소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인 통제 아니면 외부의 통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일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차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경험은 없는데요. 미국의 대배심제도 같은 경우 입법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법원의 입장에서는 기소가 되면 판단하고 불기소 사건에 관해서는 재정신청 해서 판단하는데 기소나 불기소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그런 위원회를 둔다라는 게 낫설어서 저희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입법례를 좀 더 찾아보고 나중에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사실은 영장실질심사인가요? 심문제 도입할 때도 굉장히 좀 반대의

견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잘 정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은 구속기간 관련해서 지금 수사기관, 수사권이 중수청이라든가 국수본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는데 현행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라든가 어떤 수사를 전제로 해서 검찰에 더 장기간 구속기간을 두는 제도라 이것도 좀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양 기관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개정이 되었을 때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통계적이든 구체적인 사례든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의 방향이라든가 쟁점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회적 약자,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큰 중심으로 모아져야 될 텐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무부의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도 보완수사 제도와 연계해서 지금 기능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검사가 기존에 하던 역할들을 이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꼭 보완수사가 전제가 되어야 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보완수사뿐만이 아니라 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한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수사절차상 구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사건이 기소되었을 때 재판 과정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 공백이 생기는 부분들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해 회복이 또 국민적인 관심사일 텐데요. 고소·고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민들이 형사처벌도 원하겠지만 본인이 입게 된 피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도 큰 요청 사항일 텐데 그런 범죄수익, 불법수익을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드리는 방안, 지금 아직 법무부라든가 검찰에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걸 좀 확대해서, 어쨌건 저희가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를 개정하는데 어떤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에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메시지는 드려야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좀 더 양 기관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지금 범죄피해재산 몰수법 등에 있어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그 영역을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수사권이 있었을 때는 몰수보전 청구인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몰수·추징 보전 청구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지요. 몰수하거나 추정보전하거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는

데 만약에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향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개시하고 직접수사를 거의 전담하게 될 때, 그러면 사실 범죄수익은 초반에 흩어질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범죄자들도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보전할 것인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것인가 이것도 아마 고민을 깊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반론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몰수·추징이 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유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독립몰수제라는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죄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21년도 이후 경찰의 사건통계, 처분통계 등을 보면 경제범죄사건 등에 있어서 불기소·불송치 처리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경제범죄사건, 난이도 있는 경제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지연되고 제대로 된 실체 판단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검찰이 송치받아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한번, 경제사건에 있어서도 수사절차가 불송치 결정이 나고 그걸 다시 결론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일차적으로 경제범죄라든지 범죄피해자산을 환수해야 되는 그런 경제범죄 영역에 있어서도 일단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다른 제도들도 함께 잘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건 판결문을 통해서 몰수하겠다는 것이고 그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묶어 놓는 것, 그건 수사 초기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가 수사 초기부터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건이 불송치 내지는 불기소처분이 되면 저희가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물론이지요. 그건 당연히 불기소가 되면 풀어 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기소될 걸 전제로 해서, 유죄가 될 걸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해야 나중에 불법수익도 회수하고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법무부에서도 범죄수익환수과를 새로 설치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직접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몰수보전이나 이것도 같이 그냥 같은 기관에서 착착착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먼저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검찰은 일단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수사협력 영역 중의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보완수사권으로 하기에는, 그때는 이미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런 범죄수익들이 다 흩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또 이전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시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김용민 위원** 저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김용민 위원** 차관님, 보완수사요구권 관련해서 혹은 직접 보완수사 한다는 것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볼 때는 불기소 사건으로 보이면 그냥 불기소할 수도 있겠지만 불기소 사건이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가능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찰 수사가 맞았네. 이것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유착관계가 있었다. 지금 경찰의 유착관계니 경찰이 잘못 판단했니 이런 걸 얘기하길래 똑같이 지금 반대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걸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사의 불기소처분 측면에서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보내졌고 그게 경찰이 판단을 해서 불기소가 맞다고 하면 지금 상태로 불송치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형태이지 않겠습니까? 이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 검사가 책임지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경찰은 송치의견이에요. 혹은 불송치했지만 고소인 혹은, 우리가 지금 고발인까지 이의신청 확대하려고 하니까,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가 됐어요. 검사가 해 보니까 불기소가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불기소와 관련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보완수사를 이행한 것을 근거로 불기소를 했을 때, 그런데 알고 보니 결론이 틀렸을 때, 이런 때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

특히나 그 과정에서 검사가 부패했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기소를 했거나, 대표적인 게 쿠광 퇴직금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필로 견제할 거냐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위원** 반대로 지금 경찰이 그럴 때는 검사가 직접수사, 보완수사를 직접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대안을 제시하면서 얘기하지않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검사는 항상 선이 아닌데, 검사가 이렇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혹은 부패해서, 혹은 부패는 하지 않았지만 잘못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을 교정하는, 견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경찰만 계속 교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경찰에서 사건 수사 후 내린 경찰의 결론도 과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용민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송치 사건으로 왔는데 검사가 불기소 심증을 갖고 보완수사요구를 내려보냈고 사정이 불송치 결정을 해 가지고 불기소로 결론이 났을 때 검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느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김용민 위원**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견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은 계속, 보완수사를 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기소의견이에요. 하지만 검사가 불기소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보완수사요구를 몇 가지 해서 그걸 토대로 불기소를 해 버렸다는 거지요, 의도적으로.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사정이 수사를 한 뒤에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에 있어서 기소의견의 판단기준과 검사가 기소를 해 가지고 유죄를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는 판단기준의 수준이 좀 다릅니다.

○**김용민 위원**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게 권한을 구별해 났으니깐. 하지만 이때 어떤 의도를 가졌을 때 혹은 부패했을 때, 유착관계가 있었을 때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지금 21년도 형소법 개정 이후에 이와 같이 수사 진행과 결정 주체의 분리로 인해 가지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고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누구도 잘 책임지지 않는 사건의 결론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건송치를 말씀드리는 게요 검사가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를 와서 검사가 책임지는 사건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완수사요구의 심증을 가지고 내려보냈을 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동등한 수사 주체로서 그 결론을 내린 경찰관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구조가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공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수사기관에 수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다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는 검사가 의도적으로 나쁜 결론을 내리고 권한을 나쁜 쪽으로 썼을 때의 견제 장치가 있냐고요. 지금 보완수사요구권도 마찬가지로 직접 보완수사까지 쥐 버리면 의도적으로 나쁜 남용을 했을 때 견제할 방법이 있냐는 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사가 특정 상대방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처리를 그와 같이 왜곡하게 했을 경우에는 현재 법왜곡죄가 도입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용민 위원** 법왜곡죄 누가 수사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사정이 수사합니다.

○**김용민 위원** 영장은?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사가 담당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 영장 발부해 줘요? 영장 청구

해 줘요, 검사들이? 그동안 검사를 상대로 사정이 그렇게 수많은 영장을 청구해도 다 기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지금 이겁니다. 아까 조직 기강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권한은 있지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중요하니 돌아가셔서 조직 기강을 제대로 세우는 걸 계속 검토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 외에는 정확한 견제책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범죄를 저지르는 그와 같은 검사가 있을 때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김용민 위원** 범죄가 아닐 수도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면 범죄가 아닌 모호한 영역에 있어서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말씀하신다면,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의 감찰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또한 형사절차적으로도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등의 여러 가지 절차적 보완책은, 지금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게 실효성이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반드시 실효성이 없다고……

○**김용민 위원** 거의 없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면요 지금과 같이 검사가 전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경찰이, 예컨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 부족함이 있거나 다른 측면으로 봐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을 때 검사도 대체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법이나 지금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검사가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 규정, 필요하다면 절차적 규정 혹은 거기에 대해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등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가 조금 더 진전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시원한 답은 안 나온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른 위원님들 혹시……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우선 그런 경우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수집해 보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부분에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불송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가지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현재 경찰에서 수사한 살인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그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비위가 드러나서, 그래서 경찰관들의 유착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 사건이 축소 송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 지금 검경이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

관들도 구속하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보완수사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경찰관들의 그런 축소 수사, 은폐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논거로 그것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어쨌든 피의자나 피의자 변호인하고 유착을 통해서 사건을 은폐하는 이런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든 무슨 수사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수처에 모든 사건들을 보내 가지고 공수처가 보완수사 하면서 검찰을 또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 말이 맞다면. 반드시 경찰의 수사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검사들의 문제는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완수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누구에겐가 수사권을 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의 모든 사건들은 공수처로 보내 가지고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의 사건의 은폐와 축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사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두 다 수사해야 되겠지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금 차관님께서서는 검사는 사무감사, 감찰 강화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찰은 반드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어야만 보완수사를 해야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관점보다는 수사권을 늘 배제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서 국민들께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바람직한 공직자의, 법무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간략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보완수사 얘기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등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저희가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중수청이 담당하거나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에서 이와 같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시다만, 범죄 내지는 위법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건을 송치했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 단순 살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서 이 살인사건이 어떤 의도로 발생이 됐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

해서 강간살인 등으로 변경해서 구속기소를 했고 그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에 대한 적정한 죄명 의율과 범죄의 종류 또한 양형에서 큰 차이가 나는 사건을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위원** 보완수사요구로 가능하지요.

○**박균택 위원** 저도 한마디……

○**소위원장 김승원** 예.

○**박은정 위원** 그러면 검사는 공수처로 다 사건을 송치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박균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사실은 오늘 매우 중요한 토론인데도 주장이 오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필요성, 이런 것을 제시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사례를 가지고 시한의 촉박성 문제가 됐든 아니면 당사자의 면담 필요성이 됐든 아니면 보완수사요구로 맡겼었으면 이게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됐든 아니면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서 해결했던 사례가 됐든 이것을 직접 사례로 한번 정리를 해서 법사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정리된 자료를 모든 위원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배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해서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필요하겠구나 싶으면 위원들이 받아들일 것이고 이것은 주장에 불과하지 꼭 그렇지는 않겠다, 이것 필요 없는 주장인 것 같다고 느끼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정말 딱 사례,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이 가능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사례로 실감이 되게끔 설명해 주는 자료를 제출해 주고 배포해 주면 좋겠다, 이걸 차관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많은 위원님들께 또한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이니만큼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그러려면 경찰도 똑같이 함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박균택 위원** 그다음에 행정처 차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게 법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소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권한을 넘어서 혹시나 남용이 될 우려가 있다든가 권한으로 재량으로 뭔가 남용하는 국민적 불신,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의견을 검토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살펴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박균택 위원님 질의랑 연결해서요 이번에 문제 된 장윤기 사건 같은 경

우는 보완수사를 잘한 게 맞지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잘 찾아낸 훌륭한 사례인 건 맞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사례를 무조건 못 찾을 거냐. 보완수사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수사요구권이 현재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건가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안을 내면서 만약에 보완수사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스스로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단기간에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수사팀을 교체하고 또 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믿을 수 있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른 거지요. 지금은 중수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완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완수사요구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된다면 과연 불가능한 건지, 보완수사요구를 저희 법안으로는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더 확보돼야지만 보완수사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 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법안에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어떻게 작동할 것 같은데 이걸로는 부족하니 이런 경우가 더 있어야 된다고, 현행법으로는 뭐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까지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완수사를 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논의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완수사를 잘한 사례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윤기 사건은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완수사만 답인지 저는 좀 의문이 있어서 다른 방안을,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희 법안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데 중수청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제한돼 있으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완수사요구에 한해서는 중수청이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든지 이렇게 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 그것 말고도 다른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정부 의견을 듣지만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만 논의를 하면 보완수사요구의 논의는 정부 측 의견을 못 듣고 저희가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정부가, 법무부가 그런 기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하실 말씀 있으면 두 가지 측면을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수사요구도 지금 검사실에서 10% 정도의 사건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확보 방안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좀 더 강화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보완수사 관련해서 이 공백을 말씀드리고 이유는 지금 장윤기 사건 등이 많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미비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범죄사실로까지 나아간 이러한 어떤 견제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밝혀졌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1차 수사기관도 완벽할 수 없고 비위나 이런 것들이 더해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범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에 6개 청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호남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호남지역의 중수청이 전북, 전남, 제주를 전부 다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이 아직 출범도 안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족하고 미비하고 내지는 범죄까지 나아간 수사절차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단서를 발견하고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비리나 범죄를 대처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시간이 12시를 넘었는데요. 저도 그냥 마무리 말씀만 드리고 오늘 회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찰의 수사인력이 한 3만 5000명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검찰도 한 8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사관은 한 6000여 명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검사 2000명 하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사 2000여 명까지 포함하면 8000여 명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중수청이 한 3000명 이렇게 할 텐데 저희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를 해도 분명히 거기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나타날 겁니다. 광주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들이 또 여기저기서 우발적이든 뭐든 나타날 텐데 결국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회복력이라 할까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성 같은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 어쨌건 광주 사건은 경찰에서 가족들 관련된 전수조사를 하고 또 사중의 체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체크리스트도 하고 지금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가 검찰에 그런 보완수사권을 줬을 때, 예전에 제가 법사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원지검 사건, 예컨대 간암 말기의 환자를 80여 번을 불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유족들에게 그러면 아들까지 수사해서 회사를 박살을 내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가족이 눈물을 머금고 모든 걸 다 포기하게 했던, 이의제기조차 하지 못했던,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 그러면 검찰은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지금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에서도 강압수사로 인한 사법피해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반성도 하고 재발 방지책도 발표를 하고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보완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지를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반성의

시간이 있었느냐, 재발 방지에 대한 제도 보완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이번 기회에 차관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조직원들과 함께 고민하셔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보완수사 했을 때 그러면 또 예전처럼 특수수사나 어떤 자기가 빛나는 수사에 또 구속된 피의자들을 불러다가, 구속된 피고인들을 불러다가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편의 제공하고, 담배도 피우게 하고 또 먹지 못하는 치킨도 먹게 하고 또 그래 갖고 다른 범죄 단서를 얻어서 뭔가 빛나는 수사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등등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찰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방도 없고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들 불러다가 뭐 주면서 그것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구치소 자체, 교도소 자체가 법무부 관할에 있으니까 그것은 경찰이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아무튼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다가는 수사권을 쥐도 되는 것 아니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등등의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발표할 때는 좀 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꼭,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 포함해서 차관님이나 차장님도 함께 뜻깊은 개정안으로 한번 발표를 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되 이번 주도 오늘 포함해서 두 번 혹은 세 번 심사 날짜를 잡아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기우종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 특별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남희 김승원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